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공유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21. ~ 11. 2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103호
----------	--------

발의연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유영갑 의원

1. 개정이유

-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을 완화하여 우리 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 변경(안 제3조 제1항 제3호)
 - (현행) 소 · 말은 200미터, 젖소 · 사슴 · 양(염소) 500미터
 - ⇒ (개정) 한육우 · 말은 200미터, 젖소 · 사슴 · 양(염소) 300미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조제3호 중 “소·말은 200미터”를 “한육우·말은 200미터”로
“젖소·사슴·양(염소) 500미터”를 “젖소·사슴·양(염소) 300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고, 당초에 신고·허가 받은 배출시설의 전체 면적 기준 내에서 축사의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1 ~ 2 (생략)	① 1 ~ 2 (현행과 같음)
3.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건축물(부속 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u>소</u> ·말은 200미터, 젖소·사슴·양(염소) <u>500미터</u> ,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2,000미터 이내 지역	3.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건축물(부속 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u>한육우</u> ·말은 200미터, 젖소·사슴·양(염소) <u>300미터</u> ,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2,000미터 이내 지역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104호
----------	--------

발의연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박종호 의원, 이영란 의원
남정옥 의원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계획 수립, 주민자치예산 편성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라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변경(안 제6조)
 - (현행) 25명 이내 → (개정) 20명 이상 50명 이내
-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지원 또는 선정 제한(안 제7조 제2항)
 - (현행)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제한
 - (개정)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또는 선정 제한
- 읍면동 주요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추천 인원 제한(안 제9조 제1항 제2호)
 - (현행) 읍면동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추천
 - (개정) 읍면동 주요 기관 및 단체, 사업장 등에서 1인이하 추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5명 이내”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만 19세”를 “만 16세”로 하고, 제2항 중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 또는**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중 “기관 및 단체”를 “기관 및 단체, **사업장,**”으로 하고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를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1인 이하를** 추천받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내 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 20명 이상 50명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만 16세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 또는 선정된 사람 및 ----- -----.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생략)	제9조(위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읍면동 주요 기관 및 단체,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퍼센트 이내	2. ----- 기관 및 단체, 사업장, 기타 -----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1인 이하 를 추천받아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05호
----------	--------

○제안연월일 : 2019. 11. 20.

○제안자 : 장숙희 의원, 김미연 의원
박종호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위임 조항 변경(제1조,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 동법 제2조제8호
-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 마련(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 단, 동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 대상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 대상자는 제외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정비(제9조)
 - 순천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제22조(구조금액),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 를 “제2조제8호” 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6호” 를 “제2조제8호” 로 한다.

제3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 대상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조 제2항 제4호를 “순천시의회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조제8호 ----- ----- ----- ----- -----.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 ----- - 제2조제8호 ----- ----- -----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10. (현행과 같음)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 대상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순천시의회가 추천한 사람</u>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u>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7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및 지자체 조례 제정
-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31. ~ 11. 4.)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18.(여성가족과-18858)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8.(기획예산실-11301)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31.(순천시 공고 제 2019-1980호)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8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순천시 공용차량을 순천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 활동에 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순천시 공용차량을 시민에게 무상지원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범위 및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7. 23. ~ 8. 12.)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7. 17.(여성가족과-1514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23.(기획예산실-92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23.(순천시 공고 제2019-1379호)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공용차량을 순천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순천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구성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순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가정의 구성원
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중 발급대상 구성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3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전부터 1일(그날 오전 12시까지를 말한다)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신청 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이용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횟수·기간) ①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공유사업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같은 세대원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가 월 2회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의 공용차량 이용기간이 공휴일등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이용의 승인) ①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이용신청을 한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되, 그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자녀가정을 1순위로 하여 이용을 승인한다.

⑥ 시장은 공용차량 이용신청자에게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17시까지 이용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와 운전자의 생년월일 및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않은 사람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용차량의 출고·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3.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9.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5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1년 이내 3회 이상 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1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3. 제14조에 따른 이용정지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운전자작성)

			이용자 자격명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
	연락처		주소	
운전자 1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허번호(종)	(종)
운전자 2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허번호(종)	(종)
내용	희망사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차량수령희망장소			
	행선지		사용목적	
	탑승인원	명	문화시설이용	
	기타요청사항			
	차량 수령 장소 : 순천시청 회계과			
「순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 공용차량은 만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만26세 이상만 운전가능. -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유를 순천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이용자(운전자)부담. -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신청자: (서명) 순천시장 귀하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신청자), 생년월일(운전자), 운전면허번호(운전자), 행선지, 이용목적	공용차량의 공유이용	3년

※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치정보기록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운행정보기록 및 차량위치정보가 차량단말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차량사고, 긴급구난, 통계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

제공 기관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이용기간
순천시, 각 시·군 주민부서, 경찰청, 보건복지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신청자), 운전면허번호(운전자)	이용자 자격확인, 운전자의 자격 확인, 범칙금 및 과태료 이용자 납부	3년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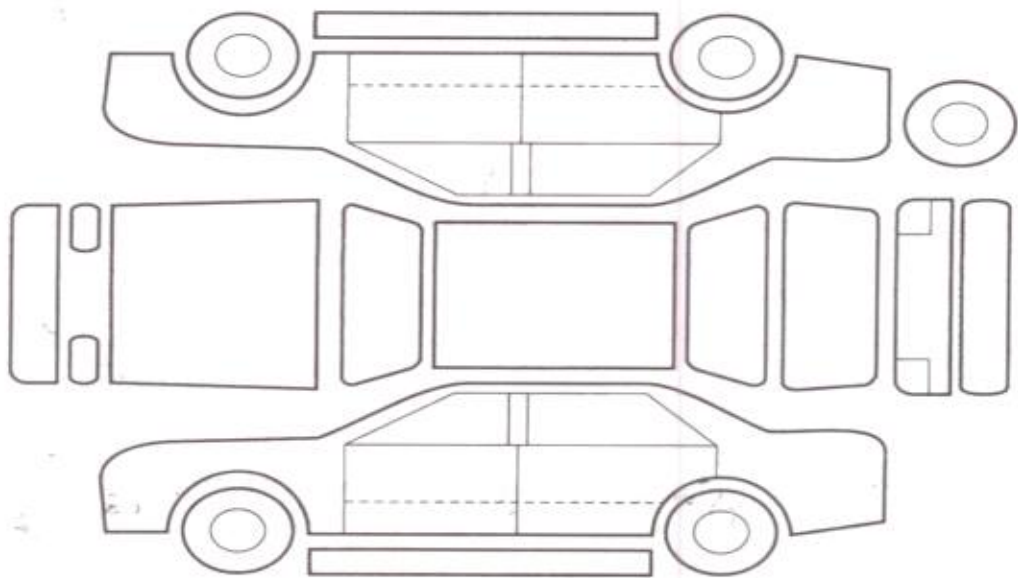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순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유류게이지(배터리 충전량) 및 차량 내·외부 상태 상호확인 하였음.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운행 중 이상이 있을 시 이용자 책임임.

*자동차 외관 손상부위 = V + (기호표시)



수령확인서				반납확인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일 시				일 시			
수령자	성 명		서명/인	반납자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순 천 시							

차량 운행일지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담당자	팀장	결 재	
차량번호				유 류 수 불 현 황	전일양	ℓ(%)	
신 청 자	주 소				금일운행	금일양 (총량)	ℓ(%)
	성 명 (연락처)	(01 - -)				소비량	ℓ(%)
	운전자성명(연락처)	운전자성명(연락처)			누 계	남은양	ℓ(%)
승차자	용무	목적지	차 량 인 수	차 량 입 고		서 명	
			일 시 분	일 시 분			
그 밖에 (건의)사항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만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운전은 만26세 이상이며 시장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차량수령시간(수령일) : 08:00~12: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 14:00~18:00 8.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삼성화재, 1588-5114)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순천시청 회계과 ☎ 061-749-5680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년 월 일

			확인	이용자	담당자	팀장
이용 관련 사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이용 자	성 명		운 전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운 전 자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보 험 회 사 명		
		주 소		사 고 접 수 번 호		
		연락처		사고차량 사진		
	보 험 회 사 명					
	사 고 접 수 번 호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 고 피해내용						
조치사항						
사고 관련사 항	차 량 수리공장					
	기타사항					

확 인 자 : (서명)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이용자·운전자작성)

			차량수령장소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운전자 1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운전면허번호	
운전자 2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운전면허번호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차종 (차량번호)		차량수령	일시분 서명
			차량반납	일시분 서명
	행선지		사용목적	
	탑승인원	명	특이사항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만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만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순천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81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신설(안 제25조의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범위 일탈사항 정비
 -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개정(안 제25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서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정비(안 제26조)
 -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 신설(안 제28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별표3)의 개정에 따라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안 제31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초지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15. ~ 11. 4.)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11.(여성가족과-2060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0. 14.(기획예산실-1299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15.(순천시 공고 제2019-1896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

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times \frac{\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times \frac{\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제31조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의3은 2020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7호·제12호·제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 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25조의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현행	개정안
기업의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신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 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 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건물의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총 공용면적}} \times \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times \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현행	개정안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분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8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폐지된 「호적법」 상 용어 삭제
-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

2. 주요내용

- 폐지된 호적법 상 용어 “본적”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 개정
 - “오손” ⇒ “훼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생략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7.(기획예산실-1455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호 외 부분 중 “오손”을 “훼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본적,”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등)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분실 또는 <u>오손</u> 등으로 장사시설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등) ----- ----- ----- <u>훼손</u> ----- ----- -----, 1. ~ 2. (현행과 같음)
제42조(묘표설치) ①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u>매장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사망년월일</u> 을 표기한 묘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2조(묘표설치) ①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u>매장자의 주소, 성명, 연령, 사망년월일</u> 을 표기한 묘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096호
----------	--------

발의연월일 : 2019. 11. 18.

발 의 자 : 박계수 의원
장숙희 의원

1. 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5조)
- 피해 방지 지원 사업 및 사업비의 보조(안 제6조 ~ 안 제7조)
-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 설치 등(안 제8조 ~ 안 제13조)
- 포상(안 제14조)
- 시행규칙(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 전라남도 등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순천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정책 및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정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지역경제과장과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순천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01호
----------	--------

발의연월일 : 2019. 11. 18.

발 의 자 : 김병권, 나안수, 정홍준
의원

1. 제안이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과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 보조금 집행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안 제12조 제2항)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교육경비 지원 제한(안 제13조)
 -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
 -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용 문제 발생 시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 및 검사(안 제14조)
 - 보조사업 종료 후 종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보고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서류와 장부 검사
 -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점검단 구성·운영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을 “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에서 “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등”으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및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① (생략) ② <신설>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및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장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06호
----------	--------

발의연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장숙희 의원
정홍준 의원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며,
- 각각의 개별조례로 규정된 장애인체육진흥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운영(제2장 제5조~제15조)
 -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
- 체육 진흥 및 지원(제3장 제16조~제20조)
 - 체육진흥 계획 수립
 -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
 -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 체육시설의 확충(제4장 제21조~22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지원
-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제5장 제23조)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 보칙(제6장 제24조~제28조)

-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표창 등

○ 부칙(제1조~제5조)

- 기존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순천시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2장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순천시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기타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순천시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1인, 순천시체육회부회장 또는 사무국장 중 1인, 지역 내 공공기관·직장(기업체)·사회단체·직능단체·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3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체육 진흥 및 지원

제16조(체육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 진흥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계획
2. 학교체육 육성·지원 계획
3.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계획
4. 지역, 전라남도 단위, 전국 단위, 국제 체육 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5.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지원계획
6. 읍·면·동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7.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계획
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9.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계획
1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계획
11.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계획
12. 공공체육시설 건축물 공간(사무실 등) 활용 계획
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운영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학회 활동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8.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0.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1.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교실 및 시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7.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조직의 활동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양성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 ③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시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체육시설의 확충

제21조(체육시설의 확충)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설치 사업
2. 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개발 학교체육시설 포함) 관리·보수사업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제5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제23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5조의 체육 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사전 협의)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한 결과 보조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표창) ① 시장은 순천시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②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순천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07호
----------	--------

○제안연월일 : 2019. 11. 20.

○제안자 : 정홍준 의원
장숙희 의원
이명옥 의원

1. 개정이유

-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문단의 설치 의무화(제16조)
- 자문단의 기능(자문사항) 구체적 명시(제16조)
 -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조례 제13조의 수행 사업에 대해 자문
 - 순천시민대학 등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함.
- 자문단의 구성 정비(제16조의1)
 - 단원으로 평생학습관 담당국장,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명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조명 “설치” 다음에 “운영” 을 삽입하고, 본문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를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제13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로, “둘 수 있다” 를 “둔다” 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순천시민대학 등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를 제16조의1로 하고, 제16조의1(중전의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문단 단원은 평생학습관 담당국장,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8조를 제16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삽입>) <u>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 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 로</u>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u>둘 수 있다.</u> <u><단서조항 신설></u>	제16조(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운영) <u>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제13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u> <u>----- 둔다.</u> <u>단, 순천시민대학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u>
<u>제17조(구성) ① ~ ② (생략)</u> <u><신설></u>	<u>제16조의1(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u> <u>③ 자문단 단원은 평생학습관 담당국장,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시의원 2명,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
<u>제18조(준용) (생략)</u>	<u>제16조의2(준용) (현행과 같음)</u>

순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08호
----------	--------

발의연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이복남 의원
김병권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육성 및 지원(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경비 관리 등(안 제4조 ~ 안 제8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구성 지급 기준 등(안 제9조 ~ 안 제14조)
-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순천시 관내의 박물관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
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 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82호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2004년 순천시민대학이 개설될 당시 수강료가 현재까지 15여 년 동안 동결 운영되고 있고, 타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낮은 수강료로 쉽게 신청하고 쉽게 중도 포기하는 등 수강 취소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많은 강좌가 신설되어 수강료 현실화 및 보다 내실 있는 시민대학 강좌 운영을 위해 강사료 인상과 함께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수강료 인상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현행	개정	
기능·직업, 강사양성교육	1개월	15,000	20,000	
취미·교양·건강교육	1개월	10,000	15,000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10. ~ 10. 3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1.(여성가족과-197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25.(기획예산실-121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10.(순천시 공고 제2019-1846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수강료에서 기능·직업교육 수강료 15,000을 20,000으로, 강사양성교육 수강료 15,000을 20,000으로,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수강료 10,000을 15,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 · 이용료 · 수강료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 수강료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기능·직업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강사양성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이용료·수강료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이용료·수강료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 수강료		☐ 수강료																																		
<table><tr><th>강좌명</th><th>기준</th><th>수강료(원)</th><th>비고</th></tr><tr><td>기능·직업교육</td><td>1개월</td><td>15,000</td><td>재료비 별도</td></tr><tr><td>강사양성교육</td><td>1개월</td><td>15,000</td><td>재료비 별도</td></tr><tr><td>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td><td>1개월</td><td>10,000</td><td>재료비 별도</td></tr></table>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기능·직업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강사양성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1개월	10,000	재료비 별도	<table><tr><th>강좌명</th><th>기준</th><th>수강료(원)</th><th>비고</th></tr><tr><td>기능·직업교육</td><td>1개월</td><td>20,000</td><td>재료비 별도</td></tr><tr><td>강사양성교육</td><td>1개월</td><td>20,000</td><td>재료비 별도</td></tr><tr><td>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td><td>1개월</td><td>15,000</td><td>재료비 별도</td></tr></table>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기능·직업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강사양성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기능·직업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강사양성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1개월	10,000	재료비 별도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기능·직업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강사양성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8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1997년 여성문화회관 개관이후 기능, 취미, 문화 등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20여 년 동안 수강료를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타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낮은 수강료로 쉽게 신청하고 쉽게 포기하는 등 수강 취소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교실의 질적 향상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강좌 운영 및 수강료 현실화를 위하여 강사료 인상과 함께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문화회관 수강료 인상

강좌명	기준	요 금(원)		비고
		현행	개정	
기능교육	1개월	15,000	20,000	
취미교육	1개월	10,000	15,000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10. ~ 10. 3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1.(여성가족과-1975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25.(기획예산실-121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10.(순천시 공고 제2019-1846호)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능교육 요금 15,000을 20,000으로, 취미교육 요금 10,000을 15,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강료 및 이용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기능교육	1개월	20,000	○ 재료비 별도
취미교육	1개월	15,000	○ 재료비 별도
경로교육	1개월	5,000	○ 재료비 별도
보 육 실	1개월	6,000	○ 1일 3시간
	1일	1,000	○ 1일 3시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강료 및 이용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수강료 및 이용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기능교육	1개월	15,000	○ 재료비 별도	기능교육	1개월	20,000	○ 재료비 별도
취미교육	1개월	10,000	○ 재료비 별도	취미교육	1개월	15,000	○ 재료비 별도
경로교육	1개월	5,000	○ 재료비 별도	경로교육	1개월	5,000	○ 재료비 별도
보 육 실	1개월	6,000	○ 1일 3시간	보 육 실	1개월	6,000	○ 1일 3시간
	1일	1,000	○ 1일 3시간		1일	1,000	○ 1일 3시간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9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8.

1. 제안이유

-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행(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대비 전자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조항을 정비하여 순천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 및 전자상품권 도입에 필요한 근거 조항 정비
 - 전자상품권(전자화폐) 발행에 따른 운영대행 협약, 운영대행사 선정 등
-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의 한도를 현행 명절기간 할인율로 설정하고 국·도비 지원 등 상품권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5%(명절 10%) → 개선 10%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
- 월 구매한도에 맞게 년 구매 한도를 개선하여 구매자의 불편해소 및 법인·단체의 할인율 적용대상 확대로 기업, 단체의 구매 확대
 - 구매한도 : 월 50만원 연 400만원 → 월 50만원 연 600만원
 - 할인율 적용대상 확대 :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는 적용대상에 포함
- 순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대상에 가맹점 확대
 - 인센티브 대상 확대 : 상품권 사용자 →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
- 가맹점 준수사항 중 상품권 사용 잔액 지급 요구 시 상품권 권면금액 사용금액 범위를 타 지자체 사례에 맞게 정비
 - 사용금액 범위 확대 : 권면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 100분의 70

- 정책발행에 따른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정비
 -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입 세대 및 전입대학(원)생 지원 추가 확대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의견 :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28 ~ 11. 1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1. 14.(여성가족과-23118)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0. 28.(지역경제과-4783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4.(기획예산실-140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28.(순천시 공고 제2019-1967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를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무기명 유가증권” 다음에 “및 전자상품권” 을 삽입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계약” 을 “협약”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각 호외 부분 중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협약을 체결하여”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기관” 다음에 “또는 전자금융업자” 를 추가한다.

제3조의1과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시장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행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운영대행사 선정) 시장은 상품권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 중 “1만원권으로”를 “1만원권, 전자화폐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다음에 “및 지역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반하는”을 삽입한다.

제7조제3항 중 “(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삭제하고,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설·추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을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설·추석 명절 전후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개별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자 등에게”를 “사용자 및 가맹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각종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장려금·포상금 등의”를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입 세대 및 대학(원)생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u>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u>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u>무기명 유가증권</u> 을 말한다.	1. ----- ----- <u>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u>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 ----- <u>무기명 유가증권 및 전자상품권</u> -----.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u>계약을 체결하여</u>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 <u>협약</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u>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u>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u>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등을 <u>금융기관이나 단체에</u>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 <u>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u> 협약을 체결하여 -----.
1.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 :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u>금고 및 판매 금융기관</u>	1. ----- ----- <u>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1(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u>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시장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행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생략)	제3조의2(운영대행사의 선정) 시장은 상품권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 1만원권, 전자화폐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설·추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략)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의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② ----- ----- ----- --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반하는 등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 ----- -- 100분의 10----- ----- ----- . 다만, 설·추석 명절 전후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시장이 정한다. ②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개별가맹점 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① ----- ----- 사용자 및 가맹점에게 ----- -----

현행	개정안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u>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u> ④ ~ ⑤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입 세대 및 대학(원)생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④ ~ ⑤ (현행과 같음)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제3조의1(운영대행의 협약 등)

-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행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설·추석 명절 전후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시장이 정한다.
- ②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개별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 ① 시장은 상품권의 사용자 및 가맹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도입 시 지류형 상품권의 판매·환전비용에 해당하는 시스템 관리운영대행 사업비 지급
- 상품권의 할인율을 국·도비 지원금액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5%, 명절 10%를 적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추가 부담 없이 연중 일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인율 적용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상품권 월 구매한도에 맞게 연간 구매 한도를 적용하고, 법인 및 단체에서 현금구매 시 할인율 적용대상에 포함
- 순천사랑상품권 구매포인트 등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가맹점에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3,105,000	-325,000	-695,000	-695,000	-695,000	-695,000
세입(a)	-	-	-	-	-	-
세출(b)	3,105,000	325,000	695,000	695,000	695,000	69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3,105,000	325,000	695,000	695,000	695,000	695,000
국비	1,400,000	120,00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도비						
시비	1,705,000	205,000	375,000	375,000	375,000	375,000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산출액 : 695,000천원
- 산출근거(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가맹점 환전 인센티브	• 인센티브 1% × 5,000,000,000원	50,000	
관광지 통합입장권 구매 상품권 환급	• 상품권 환급 35,000명 × 3,000원	105,000	
법인·단체 상품권 현금구매 할인	• 현금구매 할인 10% × 200,000,000원	20,000	
순천사랑상품권 효과분석 연구용역	• 연구용역 1식 × 20,000,000원	20,000	
순천사랑상품권 운영	• 상품권 발행운영 1식 × 500,000,000원	500,000	
계		695,000	

※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율로 국비 4%, 도비 3% 지원예정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과 장 강이구 (☎ 749-5487)

지역경제팀장 서인근 (☎ 749-5733)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9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8.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 수요에 대한 대비(제7조 이차보전)
- 금융기관의 담보 제공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간 연장(제8조 신용보증 수수료)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조건을 현재의 연 3퍼센트 이자율로 2년 이내 기간에서 지급한 이차보전금과 동일한 금액을, 2년 거치 일시상환(3퍼센트) 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1.6퍼센트)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 정비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의견 :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28 ~ 11. 1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1. 14.(여성가족과-23119)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0. 28.(지역경제과-47866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0. 31.(기획예산실-1412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28.(순천시 공고 제2019-1966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연 3퍼센트”를 “연 3퍼센트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이차보전) ① ----- ----- 연 3퍼센트 이내의 ----- ----- -----.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 4년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① ----- ----- ----- 4년-----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제7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⑥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현행 기준의 이차보전 총액 범위에서 이자율을 조정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 협약으로 매년 150백만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전액보증하고, 보증요율 연 1.0%의 범위에서 금융지원 신청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순천시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5,2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세입(a)	-	-	-	-	-	-
세출(b)	5,2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5,2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5,2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산 출 액 : 1,050,000천원
- 산출근거(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이차보전 지원금	• 이차보전금 3% × 30,000,000,000원	900,000	
소상공인 신용보증 특별 출연금	• 출연금 1식 × 150,000,000원	150,000	
계		1,05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과 장 강이구 (☎ 749-5487)
 지역경제팀장 서인근 (☎ 749-5733)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9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8.

1. 제안이유

-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해 입장료 감면 요율의 현실화
-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감면 사항은 순천시립예술단 관리 조례에 같은 사항이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관련 법 및 조례의 문구 수정
-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지원근거 조항 신설
- 지역에 상주하는 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예술진흥 및 공연장 활성화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 제4호 상주 전문예술단체의 용어 정의 신설
-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5항 1호 ~ 9호까지 입장료 감면 사항은 1호 ~ 6호까지로 조항 수정
- 제17조(위탁운영) 2항 지원근거 조항 신설
- 제18조(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조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불임.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15. ~ 11. 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24.(여성가족과-2148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0. 10.(문화예술회관-6353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0. 14.(기획예산실-1302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15.(순천시 공고 제2019-1908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주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분야 등 공연예술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 공연 및 전시할 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다만,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추가) 100분의 50 감면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100분의 50 감면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100분의 30 감면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및 인체 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 100분의 30 감면
 6.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100분의 30 감면

제1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상주 전문예술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상주 전문예술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상주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등 공연예술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 공연 및 전시할 때 <u>입장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순천시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다만,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추가) 100분의 50 감면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100분의 50 감면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100분의 30 감면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현행	개정안
<u>사람</u> 8.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제17조(위탁운영)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u>제18조 ~ 제21조 (생략)</u>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 100분의 30 감면 6.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100분의 30 감면 제17조(위탁운영) ① (현행본문과 같음) ②시장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상주 전문예술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③ 상주 전문예술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u>제19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u>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제8조

- 순천시장은 제8조 상주 전문예술단체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주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 등을 사업 완료 후 지급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대상단체 : 관내 공연예술단체 2 ~ 3개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산 출 액 : 200,000천원
- 산출근거(2020년)
 - 100,000,000원 × 2개 단체 = 200,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문화예술회관 관장 신순옥 (☎ 749-8610)

팀장 이선화 (☎ 749-861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0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8.

1. 제안이유

-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해 입장료 감면 요율의 현실화
- 순천시립예술단 지휘자 및 연출자를 포함 비상임단원의 공개채용 우선으로 전문경험과 실력이 우수한 자 위촉을 위한 위촉 기간 제한
-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제8조(자격과 위촉) 제2항 중 ‘상임단원’ 이 아닌 ‘단원’ 으로 문구 수정
- 제11조(위촉기간) 제2항중 ‘다만 지휘자, 연출자를 포함 비상임단원은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문구 추가 신설
- 제12조(단원의 해촉) 중 제8항 ‘종합평정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 제16조의3(입장료의 감면) 1호 ~ 6호 입장료 감면 사항 문구 수정
- 제7조(위탁운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게 예술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결과 : 의견제출자 있음.

건의내용	검토결과	비고
· 제11조(위촉기간) - 제2항 중 '다만 지휘자, 연출자를 포함 비상임단원은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는 문구 추가로 인해 교향악단의 특성상 파트별 악기강사 모집의 어려움 예상과 기존 강사들은 1~2년 내에 계약 만료로 해촉되는 고용불안정이 예상되어 관련 조항 신설 반대	미수용	
· 제12조(단원의 해촉) - 시립예술단 단원에 대한 해고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단원들과 협의 없이 해고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기간제법 등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항 신설 반대	미수용	
· 제17조(위탁운영) - 위탁경영은 행정의 정책수행 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고용불안정이나 복지 쇠락 등 근로조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탁경영이 설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살펴야 하므로 조항 신설 반대	미수용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24.(여성가족과-21490)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0. 14.(기획예산실-1302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15.(순천시 공고 제2019-1907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본문 중 “상임단원”을 “단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상임단원과”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휘자, 연출자를 포함한 비상임단원은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종합평정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6조의3 각 호외 부분 중 “입장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추가한다)”를 “(다만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추가) 100분의 50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 다음에 “100분의 50 감면”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100분의 50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세대원” 다음에 “100분의 30 감면”을, 같은 조 제5호 중 “소지한 자” 다음에 “100분의 30 감면”을, 같은 조 제6호 중 “의상자” 다음에 “100분의 30 감면”을 추가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 예술단체에게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이 예술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자격과 위촉) ① <u>각 단의 지휘자, 연출자 또는 예술감독, 부지휘자, 훈령장, 악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u>	제8조(자격과 위촉) ① <삭제>
② <u>상임단원은 각 단별 공개전형</u> 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u>비상임단원과 명예단원은 지휘자, 연출자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u>	② <u>단원은</u> ----- ----- . ----- <u>명예단원은</u> ----- -----.
제11조(위촉기간) ① (생략)	제11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u>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u>지휘자, 연출자를 포함한 비상임단원은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u>
제12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단원의 해촉)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u>종합평정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u>
제16조의3(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입장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u>	제16조의3(입장료의 감면) ----- ----- ----- <u>입장료를</u> <u>감면할 수 있다.</u>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다만, <u>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u>	1. ----- ----- ----- ----- (다만, <u>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u>

현행	개정안
<u>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추가한다)</u>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u>장애인</u> 3. <u>65세 이상의 노인</u>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u>세대원</u>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증을 <u>소지한 자</u> 6.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u>의상자</u> 〈신설〉 <u>제17조(규칙) (생략)</u>	<u>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추가) 100분의 50 감면</u> 2. ----- ----- <u>장애인 100분의 50 감면</u>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u>65세 이상의 노인 100분의 50 감면</u> 4. ----- ----- ----- ----- <u>세대원 100분의 30 감면</u> 5. ----- ----- ----- ----- <u>소지한 자 100분의 30 감면</u> 6. ----- ----- <u>의상자 100분의 30 감면</u> <u>제1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게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u>②시장이 예술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제18조(규칙) (현행 제17조와 같음)</u>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85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2020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대상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까지 확대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현재 순천시 조례 및 환경부 지침 상 조기폐차 신청 시 해당 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등록기간 요건이 있음.
- 국가 전체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 거주기간 요건이 사업시행에 제한이 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보다 많은 노후경유차가 조기에 폐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제1항(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1호 및 제3호 삭제
 - (제1호)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 (제3호) 순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같은 조 각 호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25. ~ 10. 1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11.(여성가족과-2059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16.(기획예산실-116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25.(순천시 공고 제2019-1798호)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 <삭제 2018. 12. 26.> 3. 순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생략)	제3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8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 조성) 및 산림조합 참여를 허용하고 식물방제업체 참여를 배제(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 「산림보호법」 제21조의 9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16. ~ 11.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15.(순천시 공고 제2019-1908호)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 조성),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 <u>록업체</u> 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① ----- -----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 조성),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u>산림조합중앙회</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